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08월 1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08월 22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11월 07일 재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위생과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련법규 조항 변경(안 제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 영업장소에 전통시장을 추가(안 제2조)
- 첨부서류 조항 변경(안 제3조)
- 영업장소 지정 신청 신설(안 제4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주요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전통시장을 추가 신설하고, 영업신고서 첨부 서류를 간소함은 물론 영업장소 지정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안 제4조를 삭제하며,
-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 중 “및 제4조에서”를 삭제.
-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

· 주관하는 행사장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